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35호
2. 발 의 자 : 김혜지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제안이유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고 미성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하여 교육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및 기초 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2. 교육감은 학생의 연령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학교안전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6. 3. ~ 6. 7.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김혜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35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미성년자의 음주운전¹⁾ 및 무면허 운전²⁾사태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학생들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통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특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가볍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바, 예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에 더해 구체적인 법규 위반 사례를 명시함으로써 조문에 구체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교육내용의 현실성을 높이고 중대한

1) 보도자료 : 음주단속 40일만에 또 적발 10대,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1심 ‘벌금 1000만원’(세계일보, 2024.1.21.)

2) 보도자료 : ‘안전띠 단속에 도주...흡친 차량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3명 체포’(TV조선, 2025.6.11.)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관한 검토(안 제8조제1항제5호)

- 우선,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 중, 기존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한 것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로 구체화하였습니다.
- 이는 기존 조문의 포괄적인 표현에 더해 법규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학생안전매뉴얼」의 교통안전 분야 3)에 따르면, 승용차 관련 안전수칙은 안전띠 착용 및 탑승 전후 주의 사항 등 기본 수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법의식과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림-1]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매뉴얼 상 승용차 이용 안전 수칙

가 승용차 이용 안전 수칙

 안전띠를 착용한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 방법

- 안전띠가 꼬이지 않게 하고, 허리띠는 골반에 어깨띠는 어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 버클은 “찰락” 소리가 나게 잠그고, 안전띠와 가슴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맨다.
- 안전띠는 골반에 걸친다. 안전띠를 배 위에 걸치면 사고 발생 시 복부 손상 가능성이 있다.
- 똑바로 앉고, 느슨하게 매지 않는다.
- 안전띠가 목 위로 지나가는 것은 위험하다.
- 뒷좌석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손이나 옷이 끼지 않도록 조심한다.

 승용차의 왼쪽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 방면이므로 승용차의 왼쪽 문을 이용하여 내리지 않는다. 인도 쪽인 오른쪽 문을 이용하여 타고 내린다.

 차에서 내릴 때에는 문을 열기 전 뒤에 오는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고 내린다.

 차 안에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는다.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주행 중에 문 잠금장치를 조작하지 않는다.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라는 문구는 문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마치 준수해야 할 항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상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을 ‘교통법규·기초질서 준수’ 와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예방’ 등으로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경우,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습 중심 교통안전교육의 지원에 대한 검토(안 제8조제3항)

-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교육감이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생의 연령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에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업 교육 지속 등을 주요 추진과제⁴⁾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연령별 맞춤형 실습 중심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체험관 현황

서울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시설				업무협약 체결한 안전체험관 현황			
체험관명	마곡안전체험관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	교실형 안전체험 시설	구분	보라매 시민안전 체험관	광나루 시민안전 체험관	송파 안전체험 교육관
개관 시기	2024. 4.	2021. 3.	2019. 3.	개관 시기	2010	2003	2017
대상지	강서구 발산공원 내	학생교육원 (축령산) 내	청덕초, 신가초, 삼양초, 상명중, 송곡고 내	업무협약 체결시기	2014.08.		2017.12.
시설규모	연면적 3,831㎡, 3층	연면적 900㎡, 2층	2개 교실 규모(90㎡) (유휴교실 활용)	위 치	동작구	광진구	송파구
	5개 체험공간 (교통, 재난, 응급처치 등)	6개 체험공간 (지진, 화재, 응급처치 등)	3~4개 소규모 체험공간 운영	시설규모	8,020㎡, 3층	5,445㎡, 3층	5,516㎡, 4층
운영주체	강서구청	학생교육원	학교	운영주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송파구청

4) ‘2025년도 교육안전 종합계획’(안전총괄담당관, 2024.12.) p.77
(추진과제 2-4) 체험 중심 안전교육 지원

○ 따라서 동 조항 신설은 이러한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	----------------	-------	----------------

5)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6864, 2025. 6. 4.)

※ 동 개정조례안은 제8조의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8조 외의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은 1건 제시됨.

다만 이는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적절하지 않을 것임.